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1차 금융위원회('26.6.17.) 조치 의결 -

금융위원회(위원장: 이덕원)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한창 및 (주)더테크놀로지(舊 (주)한창 바이오텍)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.

<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>

회사명	대상자	최종 과징금 부과액
(주)한창	회사	815.8백만원
	前대표이사 등 2인	103백만원*
(주)더테크놀로지 (舊 (주)한창바이오텍)	회사	289.8백만원*
	前대표이사 등 2인	21.8백만원

* (주)한창의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,600만원 및 (주)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89.8백만원과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'26.5.6.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既 의결(붙임 참조)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김세리 (02-3145-7316)

회사명	주요 위반사항	증선위·금융위 조치사항
<p>(주)한창</p> <p>결산기 : 2021.12.31. 2022.12.31.</p> <p>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</p>	<p><회사>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’21년 10,075백만원, ’22년 16,510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,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<p>② 지급보증 주식 미기재 (’21년 2,611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함 <p><(주)한창의 감사인 인덕회계법인>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(’21년 10,075백만원, ’22년 16,510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사인은 철강 유통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	<p><회사 및 회사관계자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· 회사 815.8백만원 · 前 대표이사 51.5백만원 · 前 담당임원 51.5백만원 - 감사인지정 3년 - 해임(면직)권고 상당 (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 - 검찰고발 (회사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 - 시정요구 <p><인덕회계법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 - (주)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<p><소속 공인회계사 2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
<p>(주)더테크놀로지 (舊 (주)한창바이오텍)</p> <p>결산기 : 2021.12.31. 2022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도매 및 상품 중개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(’21년 2,374백만원, ’22년 2,16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는 대가의 회수가능성 및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재무제표상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함 <p>② 외부감사 방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는 허위의 상품 유통 매출을 은폐하고자 허위매출 거래를 위해 제공받은 지급보증 약속서를 미제출하고,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	<p>회 사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· 회사 289.8백만원 · 前 대표이사 10.9백만원 · 前 담당임원 10.9백만원 - 감사인지정 3년 - 해임(면직)권고 상당 (前담당임원) - 검찰통보 (회사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 - 과태료 4,800만원 - 시정요구